

2024 - 1



원산지표시종합안내

QR코드를 접속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 ①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 ②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③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 ④ 벌칙
- ⑤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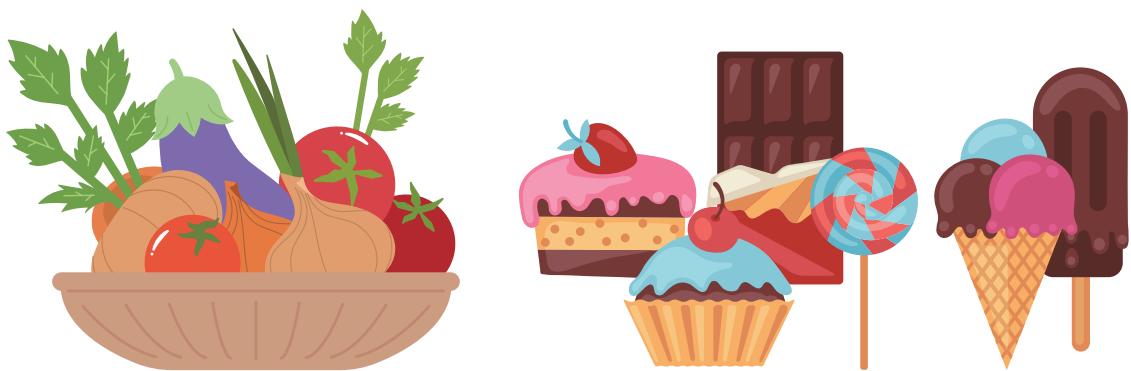
“원산지표시제도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 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 ②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거나
- ③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 국산 농산물 222 품목,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국내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80 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별표1 참고)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예시

- 올바른 표시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
(「대외무역법」에 따름)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예시

- 올바른 표시 :
돼지고기(칠레), 쇠고기(미국)
- 올바르지 않은 표시 :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①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을 혼합한 경우
- ▶ 쌀(국산) 또는 쌀(국내산),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을 혼합한 경우
- ▶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 변경 여부

① 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

예시

- 인삼,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
▶인삼(중국), 도라지(중국)



② 원산지 변경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예시

-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
▶마늘(국산), 마(국산)



③ 원산지 전환

-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 소 : 6개월 / 돼지·양·염소 : 2개월 / 그 외 가축 : 1개월(원산지 표기 시 출생국 함께 표시)

**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함

예시

-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사육 후 도축
▶돼지고기(원산지 : 국산, 출생국 : 미국)



- "표고버섯"의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 표시

예시

-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중국에서 종균접종 후 배양

통관 후 국내에서 재배·채취

접종·배양



수입·통관



채취



접종·배양부터
수입·통관일
 \geq 국내 재배 기간

▶원산지 : 중국

접종·배양부터
수입·통관일
<국내 재배 기간

▶원산지 : 국산

표시방법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포장 표면적이 $3,000\text{cm}^2$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포장 표면적이 50cm^2 이상~$3,000\text{cm}^2$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포장 표면적이 50cm^2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p>*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p>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 12포인트 ” 이상
	판매장소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 20포인트 ” 이상

2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 제외]

◆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미국 밀가루 98%, 국산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부침가루 : 밀가루(미국)

② 1순위, 2순위 원료 합이 98% 이상인 경우

- 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 22%, 중국산 참기름 1%, 국산 소금 1%를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바람떡 : 찹쌀가루(찹쌀 : 국산), 팥(중국)

③ 그 외의 경우

-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예시

호주 밀가루 60%, 국산 팥 20%, 중국산 동부 10%, 국산 소금 5%, 설탕 5%를 혼합하여 팥빵을 제조한 경우
▶팥빵 : 밀가루(호주), 팥(국산), 동부(중국)

◆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한 김치류

-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②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③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 원료 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

①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예시

- ① A원료 30%, B원료 30%, C원료 25%, D원료 15%
▶ 1순위(A, B), 3순위(C)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 ② A원료 30%, B원료 20%, C원료 20%, D원료 20%, E원료 10%
▶ 1순위(A), 2순위(B, C, D)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 ③ A원료 30%, B원료 25%, C원료 15%, D원료 15%, E원료 15%
▶ 1순위(A), 2순위(B), 3순위(C, D, E) 원료 원산지 표시

◆ 농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①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예시

- 고추장 : 국산 찹쌀 50%, 호주산 밀가루 30%, 중국산 혼합양념 15%,
중국산 고추 5%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 찹쌀(국산), 밀가루(호주), 혼합양념(중국), 고추(중국)

* 고추는 배합비율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니어도(3순위외의 원료) '고추'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추의 원산지를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이 수입완제품인 경우 가공품 자체(혼합양념)의 원산지를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②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3순위 외의 원료로서 1) 농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대상(663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지만, 해당 원료가 복합원재료 내에서 5순위 외의 원료일 경우

*** 복합원재료 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써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

- 다만, 원재료명 표시가 생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도 함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함

알아두기



농산물 명칭이란?

「농축수산물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정의된 품목에 따른 명칭 참조

예시

- 농산물 명칭인 것 : 쌀, 고추, 쇠고기, 사과, 당근, 고구마, 우유 등
농산물 명칭이 아닌 것 : 김치, 한과, 치즈, 고기, 과일, 야채 등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할 경우

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예시

— 맛나 야채죽

1순위

원료

쌀 8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40%, 중국산 40%, 미국산 2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40%, 중국 40%

2순위

원료

당근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당근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당근

3순위

원료

대파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대파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대파



▶ 원산지 표시 : 맛나 야채죽

[쌀(국산 40%, 중국 40%), 당근(국산), 대파(국산)]

◆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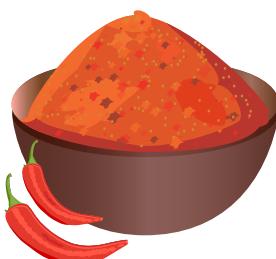
- 혼합 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② (허용) 혼합 비율 생략이 가능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 표시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혼합 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단, 국내산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원산지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② '외국산(A·B·C국 등)' 또는 '외국산(국가명은 OO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신제품으로 원료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1 '외국산(A·B·C국 등)'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②-2 '외국산(국가명은 OO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 원산지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함
- 원산지 표시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함

③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원료로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



◆ 국산(국내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된 원료 중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국내산)일 경우

표시방법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및 수입 및 반입 가공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u>진하게(굵게)</u> 표시 *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2.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4 벌칙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①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② 과징금 :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③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④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구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과태료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5~1,000만원 이하 *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20~1,000만원 이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산(국내산) 농산물 : 222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상품목
미곡류(6)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6)	배추·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근채류(7)	무말랭이, 무·알타리무·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쪽파·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 (약재)류(66)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총총갈고리등굴레), 옥죽/외유(등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흥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흥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2)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툴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기타(6)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뿩잎, 누에번데기

